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0. 6.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3. 7. 18.)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도입 및 경조사 휴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확대 및 이월 등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휴가 제도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안 제18조의2)

나.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의3)

다. 장기재직휴가 확대 부여 및 이월(안 제23조제6호)

구 분	개정전(일)	개정후(일)	비 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	신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15	확대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20	-
재직기간 30년 이상	20	25	확대

-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 이월

라. 포상휴가 확대(5일→7일, 안 제23조제8호)

마.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신설(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356호

가) 예고기간: 2023. 8. 25. ~ 9. 1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으로, “민간경력”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군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전단 중 “5일”을 “7일”로, “허가할”을 “줄”로 한다.

6.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6의2. 제6호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이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 2를 제25조의2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u>고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복무선서) ① <u>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② · ③ (생략)</p>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u>아니 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1. ~ 4. (생략)</p> <p>제6조(근검·절약) ① <u>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② <u>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복무선서) ① ----- <u>소속 공무원</u>-----</p> <p style="padding-left: 20px;">-----</p> <p style="padding-left: 20px;">-----</p> <p style="padding-left: 20px;">----- <u>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p> <p style="padding-left: 20px;">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비밀엄수) -----</p> <p style="padding-left: 20px;">-----</p> <p style="padding-left: 20px;">-----</p> <p style="padding-left: 20px;">----- <u>안 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1. ~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

-----.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
----- 같다.

제18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생략)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 공무원-----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

-----.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공무원-----

-----.

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5. (생략)

6.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

1. 2.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

-----.

1. ~ 3. (현행과 같음)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
-----.

5. (현행과 같음)

6.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7. (생략)

8.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6의2. 제6호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이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7. (현행과 같음)

8. -----

----- 7일 -----
----- 줄 -----

<p>따로 정한다.</p> <p><u>제25조의 2</u>(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p>-----.</p> <p><u>제25조의2</u>-----</p> <p>-----</p> <p>-----</p> <p>-----.</p>
--	---

[별표 3] <개정전>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후 2000. 00. 00.>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전>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개정후 2000. 00. 00.>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제18조의2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참고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